

## DIN (독일)

### 1. 개요

<p>■ 정의</p>	<p>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독일규격협회)</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국가규격 제정 기관</li> <li>- DIN 인증은 대부분 임의 인증이지만, 법률 및 규제가 규격화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는, 검사기관 및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선호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li> </ul>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N (Deutsches Institute fuer Normung : 독일규격협회 (<a href="http://www.din.de">www.din.de</a>))</li> <li>- DIN CERTCO (제품인증 분야 : <a href="http://www.dincertco.de">www.dincertco.de</a>)</li> <li>- DQS (관리시스템 분야 : <a href="http://www.dqs.de">www.dqs.de</a>)</li> <li>- DIN GOST TÜV (러시아수출품의 인증분야 : <a href="http://www.din-gost.de">www.din-gost.de</a>)</li> </ul>
<p>■ 대상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의료등 전 산업분야</li> </ul>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li> </ul>
<p>■ 적용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N (독일국가규격), EN</li> </ul>
<p>■ 인증마크</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N과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가 공동으로 CENELEC 멤버로 되어 있는 독일전기기술 협회(DKE)를 합동 운영하고 있다.</li> </ul>

■ 기타

- 규격적합성 인증 종류
  - 1) DIN 인증시스템 (DGWK에서 담당)
  - 2) VDE 인증시스템 (VDE규격에 의한 적합성인증 : VDE에서 담당)
  - 3) DVGW(독일연방 가스.수도 기술자협회) 인증시스템  
(가스 및 수도공급에 관한 모든제품의 품질인증 :  
DVGW에서 담당)
  - 4) DQS(독일품질관리시스템 인증협회) 인증시스템 (DQS에서 담당)  
(주로 건축 및 농업제품이 해당)
  - 6) GS마크(안전시험완료) 시스템  
(독일연방노동성의 기기안전법에 근거:  
BAU(연방직업안전청)에서 담당)

## 2. 독일 인증 시스템 개요

노동자나 일반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 또는 대상물의 적합성을 정식 문서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부품 또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독일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의 대부분은 법률 및 각종 규격에 의해 확립되어 왔다. 그 결과, 강제, 또는 대부분의 임의 제품 인증이 전부 방대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독일 경제가 복잡한 기술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증의 특정분야는,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 인증 실시 요청에 따라 그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들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은, 인증의 필요성 전체 중에서 80 %에서 90% 정도를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에 기재된 것은 그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 종류들이다.

- 규격 적합성 인증
- RAL 품질마크 인증
- 기기 안전법에 근거한 GS 마크 인증
- 독일의 각 주의 건축 규제에 근거한 건축재료 검사 시스템
- 계량에 관한 것
- 산업코드의 제 24절에 근거한 인증

## 가. 규격적합성 인증

### (1) DIN 인증시스템

DIN 인증 시스템은, DIN 시험완료 마크 및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사항으로 동 인증은 DGWK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 DGWK는, 독일 규격협회의 관련기관으로서, 독일 규격 협회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해당 DIN 규격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종류의 규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다.

DIN 규격 및 VDE 규격 양쪽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스템 A2에 포함 되지만 가스 및 물에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제품은 주로 시스템 A3에 따라서 인증 되어진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은 대부분 임의 인증이지만, 법률 및 규제가 규격화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는, 검사기관 및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선호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DIN 인증시스템의 사용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져 있다. 이 시스템에 합치해야하는 상세 검사 내용, 시험의 빈도 등은 DIN규격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인증 제도는 규격 위원회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DGWK는 독일 내는 물론 타국의 시험시설과도 협력하여 이들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EU 차원에서, DGWK는 다수의 인증 협정 당사자로 있으며, DGWK는 시험결과 및 인증 시스템의 상호인정을 위해 유럽 및 국제기관과 인정협약을 맺고있다.

### (2) VDE 인증 시스템

VDE 인증 시스템이란, VDE 규격에 의한 적합성 인증이다.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VDE 규격을 사용하여 제작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해당 시험은 VDE(독일전기기술자 협회)시험소에서 실시된다.

관련 제품에 따라서, 임의 인증 또는 강제 인증 모두 실시되지만, 법률 및 규제가 규격화 제품 또는 인정 기술 규칙에 따라서 제조되어진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는, 검사기관 및 사용자는, 제품이 인증 되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요구한다. 이 시스템, 내국민 또는 외국인 모두에게 개방되어져 있다. 아울러 검사는, VDE규격 또는 DIN규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세한 검사 항목, 시험의 빈도 등은 VDE 시험규칙에 규정되어져 있다. VDE는 시험결과 및 인증 시스템의 상호 인증을 위해 여러 유럽국가등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 당사자 역할을 수행한다.

### (3) DVGW 인증시스템

DVGW 인증 시스템이란, DIN-DVWG규격에 따른 DVGW마크 인증이다. 이 인증은 DVGW (독일연방가스·수도기술자협회)에서 담당한다.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가스 및 수도의 공급에 관련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인증에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인증에 속하지만, 법률 및 규격에 의해 규격화 된 제품 또는 인정된 기술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진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경우는, 검사기관 및 사용자는,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이 시스템의 이용은, 내국민 및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DIN-DVGW Work Sheet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한 검사항목, 시험규칙 등은 가스 및 수도 기술 분야 특별 규칙에 수록되어 있다. DVGW는, 시험결과 및 인증시스템의 상호인정에 관해 각종 유럽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4) DQS 인증 시스템

DQS인증 시스템은, DQS(독일품질관리시스템) 인증과 관련하여, DIN, DGQ, VDMA, ZVEL, FuO등이 서로 공동으로 제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DQS(독일품질관리시스템인증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DQS는, VdTUV(기술관리협회)에 조직되어져 TUV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직(회사, 연구소등)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인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인증은 임의인증으로, 내국민 또는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DIN규격, ISO9001(EN29000), ISO9003(EN 29003)에 근거하고 있다. 품질감독 및 검사감독에 관한 상세사항은, DQS 규칙에 규정되어져 있다.

또한 DQS는, 인증 협력 및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의 당사자이다.

### 나. RAL 인증 시스템

RAL(독일품질보증·표시협회)은, RAL품질마킹시스템을 합동으로 대표하고 있는 120정도의 개별품질협회 합동단체이다. 그 협회가 자기 소유의 품질마크를 교부한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의 종류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마크 중에는 RAL라고 문자를 기입한 것은, RAL시스템에 관련하고 있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품질협회가 제품의 종류 또는 물품마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모든 종류의 제품에 있지만, 주로 건축 및 농업제품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이 시스템을 근거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임의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건축분야의 품질협회는, 전자제 검사의 목적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는, 이에 대응하는 품질마크를 부착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 시스템의 이용은 내국민 또는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제각기 품질 사양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사양서의 대부분은 DIN규격에 근거하고 있고 상세 검사사항, 시험의 빈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RAL는, 시험결과 및 인증 시스템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각종 유럽기관 및 국제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다. GS 마크 시스템

GS 마크(안전시험완료)는, 독일 연방노동성이 주관하는 기기안전법(GSG)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시험 시설은, 이 법에 규정되어져 있고, 시험에 합격한 각종 기기들은 GS 마크를 부착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GS 마크는 시험 분야에 따라 80여 시험소가 인정 되었으며 이들은 인증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S마크시스템을 총괄하는 소관 관청은, BAU(연방직업안전청)이며, 연방노동성의 하부기관이다. 이 시스템은, 용도에 상관없이, 기기안전법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인증은 일반적으로 인의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보조적 규칙에 의해 강제 인증될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매 및 조달 부문 제품들에 GS 마크의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스템의 사용도 내국민 및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져 있다.(후자의 경우는 국내 대리인·소매상을 이용한다). 이 시스템은, DIN규격 및 특별히 지정된 기술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검사, 시험 빈도 등 특별 요구사항은, 연방 노동성에 의해 인정되어진 시험시설의 시험규칙에 규정되어져 있다. 그 이외의 EC 각국에 소재한 시험소들도, 연방노동성에 의해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연방 노동성에 의해 지정되어진 국내 시험소들은, 해당할 경우, 시험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서를 해외 제휴기관과 체결하여, 국내외의 신청자에게 이 시스템을 공정히 이용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 라. 건축재료 검사

독일 연방내 각각의 주의 건축규칙에 근거하여, 건축재료는 계속검사, 강제시험 및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서, 공공 시험시설 및 민간 시험시설, 또는 검사기관등이 인정 되어지며, 인정 절차는, 해당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IfBt(독일연방건축기술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종류의 건축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된다. 일단 지정이 되면 모든 건축제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 인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 DIN 규격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 해당 상세 사항, 시험빈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명은 DIN 18200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공인시험소 및 검사협회에 의해 규정된 특별 사항에도 합치 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인 시험소와 검사기관은, 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험 결과 및 인증 시스템의 상호인정 협약도 IfBt를 중심 추진된다.

#### 마. 표준 및 계량

##### (1) 법정 계량에 관한 것

법정 계량에 관한 인정은, 연방정부의 주요 기술 기관으로서 독일 연방 과학 기술 협회 (PTB), 주의 계량 감독기관, 그리고 전기, 가스, 물, 열량에 관계하는 計測기기는 국가인정 검증소에 의해 실시된다.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는, 계측기기, 측정기기 등 강제적으로 관련 법에서 규제 되어져 있는 기기 들이다.

PTB는, 계량 감독기관과 국가가 인정한 검증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조명규격의 검증, 강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계측 기기의 형식시험 및 인증을 관리한다. 계량 감독서는 강제검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계측기기에 대한 업무를, 국가 인정 검증소의 업무는 전기미터, 계측용 변압기, 가스, 물 및 열량미터에 관한 검교정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마크 및 인증서가 교부되어진다.

- PTB에 의한 인정 마크 및 인증서
- 계량 감독서에 의한 검증 마크 및 검증 인증서
- 국가 인정 검증실에 의해 인증 마크

이 시스템의 실시는, 강제검증의 대상 계측기기에 관해서는 강제인증 제도를 적용한다.

계측기기에 요구되는 일반 요건 및 강제 검증의 대상 요건등은 PTB사양서 및 DIN규격에 규정되어져 있다. 해외에서의 신청에 관해서도, 독일내 대리인을 지정 할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PTB 및 계량 감독서는 국제계량관련회의, 특히, 국제중鯨계량위원회(CIPM), 국제법적계량 기관(OIML)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작업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OIML의 권고에 따라 임의 인증으로 대신하게 된 부분 외에 강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규제는 특별 파일로 관리 하도록 하며 EC 이사회 지침은 강제인증 위주로 되어 있다.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해 EU 각국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 (2) DKD (독일 교정 서비스)

독일 교정 서비스(DKD)는, 주로 민간부문 업무로서, 공적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기술관리협회(TUV), 재료 시험시설 등을 포함한, 현재 71의 교정시험기관이 PTB와의 민사상 협약에 의해 교정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PTB는 DKD를 교정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PTB는 교정기관의 표준이 국가표준과의 등가성 검정 책임을 지고, 교정기관의 검사, 심사 및 감시의 책임을 진다.

이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計測기기 및 교정 가능한 재료 척도의 교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교정인증서는 국가 표준의 트레이서빌리티(표준체계)를 문서로 인증한다. 교부되는 교정마크는 적합성 마크가 아니다. DKD서비스 사용은 임의이며, 그 시스템의 활용은, 내국민 및 외국인에 상관없이 개방되어 있다.

일반적인 규칙 및 지침은, DKD 특별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다.

DKD는 서유럽 교정협력기관(WECC)내에 조직된 모든 교정서비스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상호등가성의 양국간 선언은 변함없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 DKD 의 교정인증서 인지는 유럽전체로 확대 되었다.

DKD의 교정사업에 추가하여, PTB도 필요하면 스스로 교정, 확인사업을 수행한다.

## 바. 산업코드 제24절에 근거한 인증 시스템

산업코드 제24절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 정부는, 운전이 수반되는 위험요소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는 다수의 산업 Plant들은 특별한 기술사양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취지로 규정되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시운전 전, 운전 중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이들의 사양서와의 부합 여부를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아래 설비가 규제 대상 설비이다.

- 증기용기
- 압력용기
- 인화성 액체의 저장, 충전, 수상 유송을 위한 플랜트(공장설비)
- 엘리베이터 장치
- 폭발 위험이 있는 실내 전기기기

"강제적 관리대상의 플랜트"라고 지정되어진 플랜트는, 규제 조건에 따라 인정되어진 기술 기준에 따라 건설되고, 운전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 전문가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전문가가 검사를 해야만 한다. 이

들 전문가를 기술관리기관 속에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사 실시를 위임한 전문가 및 전문가가 소속한 각각의 기관은, 연방 주가 소관하는 관청에 의해 교부되어진 인정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연방州는, 산업코드 제24c절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규제에 관한 인정서에 대해서 조건을 규정했다. 산업코드의 조건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업무는, 판매 또는 시험운행 되어지기 전에, 플랜트 또는 그 구성부분의 초기 시험 및 인증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전 중의 플랜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3. DIN마크의 최근 동향

독일규격협회마크 DIN 및 DIN EN은, 생산성에 의해서, 그들 제품의 Marking 또는 서비스 업무 마크로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업무의 성과가 DIN 및 DIN EN 규격 또는 그 이외 정당하게 만들어진 사용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사실이 전제로 되어 있다.

새로운 독일의 상표권 개정법에서는, 1994년 10월 25일 (BGRI 1994년판 제1부)부터, 마크 사용에 관한 보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규격협회는, 그들의 표지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소유한 마크에 관하여 규칙을 개정했다. 종래의 관례에 대해서, 협회 마크 DIN EN의 경우와 동일하게, 협회 마크 DIN 에 관해서도, 등록 업무가 적용되어지도록 되었다. 협회 마크를 사용하는 인증마크 등록 조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다. 협회 마크 DIN 에 대한 새로운 등록업무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다. 협회 마크 DIN을 지금까지 규격에 적합한 마크로 그들의 제품에 사용해 왔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 기간 중에는, 등록 없이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는 협회 마크 DIN 의 등록이 의무 사항이 되었다.

개인 및 기업은, DIN 또는 DIN-EN 규격에 적합한 제품 혹은 서비스 업무에 관해 협회 마크 등록을제의할 수 있다.

더욱이 상세한 정보와 제의 방법은, DIN CERTCO (적합성평가를 위한 조직)에서 입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기 ·전자 ·가스 ·수도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25,000여종의 제품 카다로그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15,000여건의 인증서가 발행되었다.

강제분야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DIN 74069 0(Retroreflecting number plates for motor vehicles), STVZO 등이 있다.



#### 4. 안전규제와 DIN의 적용

분야	법령, 규칙	관련 DIN 규격
기계 안전	Regulation for prevention of accident EWS 89/392	283건의 DIN/EN 규격
전기기기의 안전	전기안전법 73/23/EWG	391건의 DIN/EN 규격
소비자 제품의 안전	Law for product liability, 85/374/EWG	
보일러·압력용기	Regulation for equipment safety, 87/404/EWG	132건의 DIN/EN 규격
EMC	Las for EMC, 89/336/EWG	20건의 DIN/EN 규격
공통 에미션 규격	DIN/EN 50081/T1(VDE 0839/T81-1) DIN/EN 50081/T2(VDE 0839/T81-2) DIN/EN 50082/T1(VDE 0839/T82-1)/	EN 50081-1 EN 50081-2 EN 50082-1
저주파 장애	DIN/VDE 0838/T2 DIN/VDE 0838/T3	EN 60555-2 EN 60555-3
RF 장애	DIN/VDE 0875/T11 DIN/VDE 0872/T13 DIN/EN 55014/T1(VDE 0875/T14) DIN/EN 55015/T1(VDE 0878/T15) DIN/VDE 0878/T3	EN 55011 EN 55013 EN 55014 EN 55015 EN 55022
Immunity	DIN/VDE 0872/T20 DIN/VDE 0808/T1	EN 55020 EN 50065-1

#### 5. 보일러·압력용기에 관한 안전기준

제품	법령	설계기준	승인기관
보일러	Trade and Industrial Code (GewO)* Dampfk V (1980) (Boiler Order)*	TRD DIN Standards	RW-TÜV
정치식 압력용기	GewO (See above) Druckbeh V (1992)* (Pressure Vessel Order)-Section 2 and Section 5 (Pipework)	TRB AD-Merkblätter DIN Standards TRR	

제품	법령	설계기준	승인기관
가반식 압력용기	GewO (See above) Druckbeh V (1992)* (Pressure Vessel Order)-Section 3 Gefahrgut V Strasse (GGVS) Transportation Code for Dangerous Goods on Roads)1985	TRG DIN Standards	RW-TÜV

. DIN : German Institute of Standards

. TÜV : Technical Inspection Organizations

. TRD (Technische Regeln für Dampfkessel)

: Technical regulations for Steam Boilers

: Deutschen Dampfkessel- und Druckgefass Ausschuss(DDA)가 제정한 독일 보일러의 재료, 구조계산, 시험 등의 기준. 독일어로서 A4판 팜플렛 형식으로 Verband der Technischen Überwachungs - Vereine e.V 에서 출판된다. 영문번역판도 대부분 발행되어지고 있다. TRD 기준은, 3자리의 숫자로 표시되어진다.

(예)TRD 103 : Stahlguss

. AD (Arbeitsgemeinschaft Druckbehälter)

: Technical Rules for Pressure Vessels

: AD는 다음의 7개단체로부터 구성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위원회로부터 만들어진 규격. 압력용기의 재료, 구조, 계산, 부속품의 지침으로서, 재해방지의기술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 Fachverband Dampfkessel, Behälter-und Rohrleitungsbau e.V.(FDBR),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 tern e.V.,

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e.V. (VCI),

Verband Deutscher Maschinen-und Anlagenbau e.V. (VDMA),

Verein Deutscher Eisenhüttenleute (VDEh),  
VGB Technische Vereinigung der Grosskraftwerksbetreiber e.V.,  
Vereinigung der Technischen Überwachungs Vereine e.v. (VdTÜV)

: AD규격(Merkblätter)는 A4판 팜플렛형식으로 독일어로 Verband der Technischen Überwachungs-Vereine e.V.에서 발행되었다.

: 대부분의 영역판임. AD규격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A (보조적 설비), B (설계), G (충론), H (조립), HP (조립 및 시험),  
N (비금속재 압력용기), R (원자력 용기), S (용접), W (재료)

. AD-Merkblätter : AD data Sheets

. TRB (Technische Regeln Druckbehält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BMA))

: Technical Regulations on Pressure Vessels

: 압력용기의 기술규정(Codes of practice for pressure vessels)을 발행

. TRG (Technical Regeln Druckgase)

: Technical Regulations Governing Pressurized Gases

: Deutschen Druckgasausschuss(DGA)가 측정하는 독일의 최고 가스기의 재료,구조에 대한 기준, TRG기준은 3개만의 수자로 표시된다.

예) TRG 001 Allgemeins : Aufbau und anwendung der TRG. TRG은 독일에서 A4판 팜플렛형식으로 vEREINE e.V로부터 출판되었다.

. TRP : Technical Regulations for Pipelines

6. DIN 인증서

<b>DIN CERTCO</b> Gesellschaft für Konformitätsbewertung mbH	
<h1>CERTIFICATE</h1>	
The company	
hereby receives confirmation that the product/s <b>100 % Polyester raised fabric for toys, dyed and finished</b> conform to the <b>Certification scheme Textile Products</b> and is granted the licence to use the mark	
	
in conjunction with the Registration No. below.	
This/these product(s) is/are qualified for textile products with direct contact with skin.	
Registration No.: 7T013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2006-04-30.	
See annex for further information. DIN CERTCO Gesellschaft für Konformitätsbewertung mbH Burggrafenstraße 6, 10787 Berlin Germany	
2006-04-26 Dr.-Ing. Michael Gärner - Managing Director, Head of Certification Body -	
	

7. DIN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Insert 사출물	마직물
PCM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사무용 의자부품
Soft boa, E.F velboa	인조모
가스 실린더	체형맞춤베개
기능성속옷	초극세사타올
나염된 면직물	표면처리된 실리콘고무
디스크 휠	